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프라이버시보호

정준현*

I 처음에	IV 프라이버시 보호와 규제
II 유비쿼터스(컴퓨팅) 사회	1.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규제론
1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의의	2 인터넷 가버넌스(자율규제)
2 유비쿼터스 사회	3 정부규제
3 유비쿼터스 사회의 문제점	4 작은 맺음
III 새로운 사회와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	V 맺는 말
1 프라이버시의 개념변화	
2 현행법상 프라이버시	
3 프라이버시의 헌법적 가치	

I. 처음에

현대정보화사회는 현실의 생활인이 사회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신의 생활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결과 대부분의 현대인은 “삶”을 전제로 적극적인 자기결정권을 통한 삶을 살기 보다는 첨단 정보화기술이 제공하는 편리성에 수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대표로 하는 작금의 정보사회에 대한 일반인의 적응력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 문제에 대한 윤리적 내지 법제적 대응이 채 성숙되기도 전에¹⁾ 언제

*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법학박사

1)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페이지를 표시하는 지시를 컴퓨터에 실행시킬 경우 기술상 기록 또는 로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보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

어디에서나 개인의 흔적을 전자적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소위 유비쿼터스컴퓨팅에 의한 사회로의 발전이 도모되고 있어²⁾, 개인이 전자적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은 점증적으로 전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점에서 변화된 사회에 합당한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민간부문에 있어서의³⁾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보화의 발전 특히,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회의 모습과 그에 상응하여 변화된 프라이버시 개념과 현행 법제가 변화된 프라이버시 개념에 상응하는 보호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⁴⁾

II. 유비쿼터스(컴퓨팅) 사회

1.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의미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는 의미의 라틴어인 ‘Ubiquitous’와 컴퓨팅이 결합된 단어로 “언제 어디에서든 어떤 기기를 통해서도 컴퓨팅할 수 있

한 조사결과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은 6.5%에 불과하고 인터넷의 이용자 대부분은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여 페이지를 표시시키면 어떠한 정보가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어떠한 정보를 기술적으로 기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전자 메일 주소나 화면사이트로 답한 사람이 상당수 있고, 단순히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것만으로는 네트워크의 이용상황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사용환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보가 기록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GVU's 10th WWW User Survey (Oct. 1998) <http://www.gvu.gatech.edu/user_surveys/survey-1998-10/graphs/privacy/q18.htm>.

- 2) 서울시는 최근 상암동에 구축되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에 유비쿼터스 공간 개념이 적용된 디지털 미디어 거리(DMS)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상암동에 ‘DMS’ 건설”, 전자신문 2003 10 22
- 3)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을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아우르는 일반법의 제정에 있어 통합입법의 형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형식을 취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일단 본고에서는 분리를 전제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 4) 급속에도 피로가 있는 것처럼 제도에도 피로가 있다면서 제도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상응하여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土屋大洋, 情報と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 坂上弘, 2001, 162쪽.

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미국 제록스 펠로알트 연구소의 마크 와이저는 1991년에 쓴 자신의 논문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어디에서든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환경”(computing access will be everywhere)으로 정의하였고, 1984년 일본 도쿄대가 추진한 트론(TRON, The Real-time Operating system Nucleus)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카무라 겐 교수는 “모든 물건에 컴퓨터를”이란 슬로건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설명하고 있다.⁵⁾

유럽에서는 2001년부터 유럽연합의 정보화사회기술 계획의 일환으로 “사라지는 컴퓨팅(disappearing Computing)”이 추진되고 있는바, 이것은 유럽판 유비쿼터스라고 할 수 있다.⁶⁾

2 유비쿼터스 사회

“모든 물건에 컴퓨터를” 또는 “사라지는 컴퓨팅”을 내용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회는 무한대의 고유식별번호 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IPv6”의 기술개발로 도로·다리·터널·빌딩·건물벽·천장·화분·냉장고·구두·시계·종이·물 컵·책상 등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수많은 환경과 대상물 속에 태그칩이나 RFID 또는 더스트 칩을 심을 뿐만 아니라⁷⁾ 인간의 인체에도 칩을 이식하거나 입는 컴퓨터를 통하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과 대상이 지능화되고 전자공간에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이 공존하는 사회로 진화될 것이다.⁸⁾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과 물건이 언제 어디서나 제한없는 접속(Ubiquitous Access)을 하게 되는 결과 개인의 다양한 수

5) “작은 제목2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해서”(유비쿼터스(Ubiquitous)를 준비하자), 중앙일보(joins.com), 2003. 5. 26

6) 김정훈,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1/6 쪽, <http://168.126.177.8/project/brief.nsf> (2003. 12. 10. 접속>

7) 도시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사물에 감지, 추적, 감시, 작동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칩을 식재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SoC네트워크”가 도시의 기능을 제고하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도 한다. 김정훈,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5/6 쪽

8) 물리공간이 제1공간이고 전자공간이 제2공간이라면 유비쿼터스공간은 제3공간이 된다. 이곳에서는 물리공간과 전자공간간 단절과 자체는 사라지고 서로 공진화하여,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합리성과 생산성은 그 어느 때보다 고도화될 것이다. <http://www.ipv6.or.kr/archive/kripv6forum/html/1568.html> 기타, 유비쿼터스 사회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하여는 박승찬, “유비쿼터스 IT의 2030년 사용자 시나리오(I), (II), (III), (IV), (V)” 등 참조<<http://www.shtek.co.kr/pds/files>>

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김칫스러운 병이나 위기로부터 개인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등 우리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반면, 망라적인 개인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을 통한 사인에 의한 사인의 지배가 우려되기도 하는 것이다

3. 유비쿼터스 사회의 문제점

종래 빅 브라더로 표현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은 통상 정부에 의한 개인 정보의 일원적 관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사기업이 대규모의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결과 분산되어 존재하고 있는 대규모의 데이터 베이스에는 정부의 한 기관이 보유한 것보다도 큰 것이 적지 않고, 수집·축적된 개인정보가 당초의 목적과는 별개의 목적으로 이용될 기회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뉴욕주의 사법부장관은 “계약회사가 아무런 관계없이 서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가능케 할 필요성이나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신청서나 구매품목에 관한 정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술개발에 따라 상용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분석 또는 이용하는 것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데도 연방 및 주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빅 브라더(Big Brother)가 아니라 빅 브라우저(Big Browser)”⁹⁾라고 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업자를 경계하였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회는 “드러난 컴퓨팅에 의해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한 명령행위에 의해 개인 행적을 어느 정도 분산·디지털화하는” 기존의 정보화 사회와는 달리 “숨겨진 컴퓨팅에 의해 일정한 명령행위 없이(Just Its)¹⁰⁾ 언제 어디에서나 개인의 행적을 집약적·전자적 기록으로 남기는”, 전자적인 측면에서는 일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개인을 완전히 발가벗기는 사회라고 할 수 있고 그 점에서 개인 프라이버시의 한계와 그 보호가 핵심과제로 대두되는 사회¹¹⁾라고 할 수 있다.

9) John Caher, “Big Browser has replaced Big Brother”, NYAG Says(January, 24, 2000)
<<http://www.nylj.com/stories/00/01/012400a2.htm>>

10) “명령없이도 컴퓨팅 서비스 받는 세계 . . . 유비쿼터스”, <http://www.logis-net.co.kr/gisa/2003009/030930-7.htm> 3/3쪽

11) 작금의 정보화사회가 사이버 공간과 현실공간의 이원적 분립상태라고 한다면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회는 이를 두개의 공간이 결합하는 새로운 사회로도 이해할 수 있다 같은 취지, “명령없이도 컴퓨팅 서비스 받는 세계 . . . 유비쿼터스”, 1/3쪽

따라서 유비쿼터스의 사회는 무엇보다도 빅브라우저에 의한 개인지배를 더욱 경계해야 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개입을 가능한 저지하려는 “인터넷 가버너스”¹²⁾의 움직임과 관련할 때 빅브라우저에 의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에 있어 국가의 역할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¹³⁾

III. 새로운 사회와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

1. 프라이버시의 개념변화

가. 산업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용어는 ‘사람의 눈을 피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Privatun’에서 유래된 말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세기 말 시작되었다. 1888년 미국의 토마스 쿨리 판사는 종래 명예훼손의 법리와 생활방해(nuisance), 불법침해(trespass), 사적 도청의 제한 등에 따른 반사적 이익으로 관념되어 오던 프라이버시를 불법행위법상의 “혼자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 정의하였는데 2년 뒤인 1890년 Warren과 Brandeis라는 두 변호사는 자신들의 논문 “The Right to Privacy”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서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쳐 1902년 원고가 동의없이 자신의 초상을 회사 상품의 선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Roberson v. Rochester Folding Box Co.)에서 뉴욕 주 대법원이 입법에 의한 해결권고를 함으로써 비로서 입법상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¹⁴⁾

12) “인터넷 자율규제와 거버너스”, [http // www . nytimes.org/news / view.php?news_num=3803](http://www.nytimes.org/news/view.php?news_num=3803).

13) 2003년 11월 27, 28일 원주 오크밸리에서 개최된 전자정부 연찬회에서 김태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단순한 집행기능은 민간에 대폭 이양되고 정부는 네트워크 조정자 혹은 지식관리자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 전자정부는 네트워크조정자”, [http //www . etnews.co.kr/news/detail.html?id, 2003 . 11. 26](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3.11.26)

14) N.Y. Civils Rights Law의 제50조 및 제51조의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0조 . 광고 또는 영업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성명, 초상 또는 사진을 본인의 서면 동의없

그 후 1931년의 *Melvin v. Reid* 사건¹⁵⁾을 계기로 프라이버시권이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의하여 확고부동한 법원칙으로 승인을 보게 되었다. 동 대법원이 헌법상의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하여 제시한 법원칙은 다음과 같다.¹⁶⁾ ① 프라이버시권은 재산이 아니라 인격에 수반되는 권리로서 그에 대한 침해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성립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② 프라이버시에 관한 소송은 인적 소송이므로 생존하는 동안에만 인정되고, 이미 그 사실을 공표하였거나 이에 동의한 때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공적 인물에 해당되어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프라이버시권은 뉴스에 대하여는 양보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정당한 관심과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프라이버시권은 구두에 의해서는 침해되지 않으며 소권은 이익을 목적으로 공표(publishing)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나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수집·분석·검색·복제·유통이 용이해지면서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전통적인 '혼자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즉, 한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타인에게 유통시키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로서 이해되기 시작된 것이다. 최근에 스팸 메일 발송,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프라이버시 침해로 문제 삼는 것도 이런 개념의 변천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날의 프라이버시개념을 다시 살펴보면 대략 다음의 3가지 또

이 사용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은 경범죄에 처한다

제51조 제5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명, 초상 또는 사진을 광고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당한 자는 그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해 형평법(Equity)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 원고인 멜빈이 매춘부로서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으나 무죄로 석방되어 정상적인 가정주부로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고 라이드가 1925년 원고의 동의없이 그녀의 본명까지 사용하여 그녀의 과거를 기초로 한 영화 "The Red Kimono"를 제작·상영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청구소송사건이다. *Melvin v. Reid*, 112 Cal App 258, 297(1931).

16) 변재옥, "프라이버시의 권리(I)", 10쪽, 윤명선,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역사적 고찰 - 미국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제20권제1호, 116쪽

는 4가지의 유형을 내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¹⁷⁾ 즉, 프라이버시권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혼자 가만히 있게 할 권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에는 첫째로, 주거 등 사적인 공간을 포함한 사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로서의 공간 프라이버시 내지 사생활 프라이버시권이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제17조)”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제16조)”라 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여 인간적 존재로서의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생활의 내용 및 명예·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활동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받지 않게 하고 있다.

둘째,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개인간의 의사소통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8조)고 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이란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의 교환에서부터 전신, 우편, 전화, 컴퓨터통신, 이메일 등 모든 형태의 의사전달 방식을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의사소통의 감시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정보프라이버시권이다. 이것은 종래 상대권에 머물렀던 프라이버시가 정보화 사회를 겪으면서 적극적 행위권으로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또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며, 타인에게 제공된 자신의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의 전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즉, 정보주체가 타인으로부터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와 감시당하지 않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나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¹⁸⁾

끝으로, 결정프라이버시권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사적인 사항의 선택과 관련하여 타인의 간섭없이 자신의 판단과 위험부담으로 피임, 성관계여부, 결혼과 이혼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¹⁹⁾

17) 황인호,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전개과정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19집(2003.9.) 238-239쪽

18) 우리 판례도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여 소위 정보프라이버시권을 판례상 인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대판 1998. 7. 24. 96다42789

다 유비쿼터스 사회의 프라이버시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유비쿼터스 사회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물건에 숨겨진 컴퓨팅에 의해 일정한 명령행위 없이(Just Its) 언제 어디에서나 개인의 행적을 집약적·전자적 기록으로 남기는", 전자적인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신을 공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적을 타인의 권한없는 적극적·소극적인 관여부터 보호해야 하는 사회임을 감안할 때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감지할 수 있다.²⁰⁾

라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프라이버시권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권리지만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다 특히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여러 종류의 자유가 균형있게 전개되기 위해 프라이버시권은 그 보호와 더불어 다른 자유와의 한계 결정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와 함께 공공의 이익은 프라이버시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사회 구성원이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 사회에 이익이 될 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미국의 판례는 보도적 가치, 교육·계몽적 가치, 오락적 가치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일반인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가능한 한 빨리 보도하는 경우나 일반인에게 어떤 지식을 제공해 교육·계몽하는 가치를 지닌 겨우 공익에 부합한

19)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사생활을 중요 요소로 삼는 점에는 프라이버시권과 유사하지만 네트워크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비밀성을 본질적인 특징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동의에 따른 위험의 인수라고 하는 사적 영역의 공개여부 결정권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구별하는 입장도 있다 樋口陽一 編, 講座憲法學3, 日本評論社, 1994, 248쪽. 그밖에 관한 사항은 줄고, "전자네트워크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인터넷법연구 제2호, 186쪽 이하 참조

20) C3S보안연구소 프라딕 코솔라교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실행을 위한 것이며 한번 켜지면 영원히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재부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보안 문제를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면서 "모든 국가가 적절한 보안연구소를 갖추고 이들이 서로 연대해야 바이러스 사태, 해킹공격, 사생활보호가 가능하다"고 한다 "유비쿼터스 혁명이 시작되었다", 전자신문 2003 10 13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락적 가치의 경우 대중을 즐겁게 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갖고 있기는 하나 오락은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학문적·교육적 가치도 희박하므로 프라이버시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다.

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가 결정돼야 한다"는 '공적 인물 이론'의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의 한계를 결정할 수도 있다

2. 현행법상 프라이버시

전통적인 의미의 사생활프라이버시권과 정보화사회의 특성이 가미된 의사표통프라이버시권을 규정하고 공법분야로는 헌법, 형법이 있고 특별법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으며 정보화 사회에서 새롭게 탄생한 정보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가. 사생활프라이버시권과 의사소통프라이버시권

1) 헌법 현행 헌법은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그리고 제16조에서는 주거의 자유권을 각각 규정하여 사생활의 프라이버시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8조에서는 통신비밀권을 보장함으로써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다.

2) 형법 우리 형법상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지만²¹⁾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 및 명예훼손죄(제307조) 등이 있다. 특히 비밀침해죄의 경우에는 제2항에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처벌하고 있어 해킹이나 스파이 웨어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의 방지효과를 피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1) 이와 관련 물래 카메라에 의한 촬영과 배포가 사회문제로 되었을 때 범죄유형으로 "사생활비밀침해죄의 신설"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한위수, "사생활비밀의 보호 - 그 공법적 측면"(학국법학원 2003.12. 8. 개최 심포지엄, "사생활비밀의 보호" 발표논문), 2쪽

3)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제3조)하여²²⁾ ①우편물에 대한 검열, ②전기통신의 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③타인간의 비공개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우편이나 전기통신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육성대화까지 그 보호범위에 둬으로써 의사소통프라이버시 일반을 보호하는 기본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²³⁾

나 정보프라이버시권

1) 헌법 우리 헌법이 정보프라이버시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임은 일반적으로 시인되고 있다.²⁴⁾ 다만, 그 근거에 대하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로 보는 입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22) 참고판례 구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그 규율의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그 중 통신을 다시 우편물과 전기통신으로 나눈 다음, 동법 제 2조제3호로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화통화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동법 제3조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나아가, 동법제2조제7호가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은 그 전호의 ‘우편물의 검열’ 규정과 아울러 고찰할 때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호 소정의 각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위 법에는 ‘채록’이라고 규정한다)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따라서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3조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 점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23) 한위수, 앞의 논문 5쪽 참조,

2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429쪽,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29집제3호, 88쪽, 이인호,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중앙법학 창간호, 1999, 69쪽

헌법 제17조에서 찾는 입장 및 헌법 제17조와 주거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6조 및 통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8조도 보충적으로 기능한다는 입장 등으로 갈라지나 이 권리는 그 용어의 확대개념으로서 개인지배방지를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점에서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어떠한 입장에 의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의 사생활보호는 상태권으로서의 침해방지라는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성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보에 대한 지배권으로서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행위권으로서의 적극적인 요구권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²⁵⁾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²⁶⁾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2조2호, 3호) 및 제58조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 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용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의 경우 동일한 벌칙에 처해지게 함으로써(법 제62조 제1호 내지 제3호) 이 법이 사실상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다음 OECD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8개의 원칙 중 ①이용목적과 범위를 고지한 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도록 하여(22조, 24조) “목적제한의 원칙”을, ②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수집의 사전동의유보부 금지를 규정하고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함(23조1항, 2항)과 아울러 목적을 달성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의무의 부여(29조) 및 정보주체의 정정요구권을 인정(30조1항)함으로써 “정보의 질과 비례의 원칙” 및 “민감한 정보에 대한 원칙”을 그리고, ③개인정보관리자를 지정할 의무(27조)와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25조1항) “투명성의 원칙”을 각각 수용하고 있는 외에, ④정보통신제공자로 하여금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28조) 미흡하나마²⁷⁾ “안정성의 원칙”을

25) 한위수, 앞의 논문 16쪽.

2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다시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쇼핑물을 운영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중 인터넷 관련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다.

수용하고 있으며, ⑤정보주체에 대한 열람·정정·철회 및 정정을 요하는 정보에 대한 제공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30조)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입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3. 프라이버시의 헌법적 가치

프라이버시와 공동체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해 전제주의자들은 프라이버시가 존재하는 한 사회의 성립은 없는 것으로 보아 부정적인 입장에 서고 있다²⁸⁾ 이와달리 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토대로 하는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개인의 정신적 안정을 보호하는 프라이버시가 사회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인정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전제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투명하게 되는 결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내적 생활을 더 이상 자유롭게 가질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개인의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형해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개인정보의 집적이라는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빅브라더’가 되었던 ‘빅브라우저’가 되었던간에 전체국가적 성격을 가진 정보지배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큰 유비쿼터스 사회에 있어서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보호는 국가의 기본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프라이버시 보호와 규제

1.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규제론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그 우려가 더욱 높아진 정보지배를 통한 개인지배 문제의 방지를 두고 현재 정부규제론과 인터넷 가버넌스(Internet Governance)론²⁹⁾ 또는 자율규제론³⁰⁾ 등의 논의가 행하여지고 있다.

27) 망법상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입법적 보완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 황인호 앞의 논문 234쪽

29) 루트 서버에 대한 관리를 정부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미 상무부가 1998년 10월에 설립한 국제적인 비영리법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요컨대, 인터넷 가버넌스(자율규제)에 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의 지나친 규제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고 성장기에 접어든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보호는 민간자율에 맡기고 자율규제가 실패할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네트워크상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2 인터넷 가버넌스(자율규제)

인터넷 가버넌스는 정부규제의 한계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20세기의 민주주의는 국민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국회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법률을 제·개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국민은 그 법률을 자신의 행동규범으로 삼아 왔지만, 정보화시대를 맞이한 21세기에 이르러 법제도는 현재 制度疲勞를 겪고 있기 때문에³¹⁾ 또는 인터넷의 물적 기반에 근거한 풍부한 의사소통과 거래환경은 이미 정부통제라는 간편한 시스템으로 유연하게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IT의 발전에 따른 가버넌스와 지구촌화가 결합된 지구촌 가버넌스(Global governance)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 한다.³²⁾

어쨌든 현실세계의 중앙집중적인 관리체계와는 달리 이해관계에 기반한 다중주체들의 합의관리로서 인터넷 가버넌스는 다음의 요소를 내용으로 한다.

첫째, 국제적인 접근이다 전통적인 매체와 달리 인터넷 규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바, 이 기구의 정책결정에 따라 인터넷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ICANN과 인터넷 가버넌스”, <http://proms.snu.ac.kr/~news/home/inter/icann.htm>, <2003 12 15 접속>

30) 자율규제는 통상 정부규제에 대한 것으로서 시장에 의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유비쿼터스 사회와 같이 정보화가 현실생활을 지배하게 되는 사회에서는 다중주체의 참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다중주체에 의한 합의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가버넌스가 자율규제를 갈음한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 자율규제와 거버넌스”, http://www.ytimes.org/news/view.php?news_num=3803, 2/4 쪽 참조.

31) 土屋大洋, 情報とグローバル・カハナンス, 坂上弘, 2001, 162-164쪽 참조

32) 미국정부는 인터넷 관리체계로서 인터넷 가버넌스 모델을 설계하였다고 한다 즉, 인터넷 물리적 기반구조에 맞는 관리규칙에 따라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인터넷이 가져올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인터넷 자율규제와 거버넌스”, 4/1쪽 참조

설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크 규제의 원칙이 공식화되고 합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지구촌 가버넌스 시대에는 국가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이나 지역적인 이익, 범세계적인 이익이 우선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익은 “Zero sum”적인 국제정치의 가치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종·다양한 가치관의 수용을 의미한다.

둘째로, 모든 당사자들의 참여이다. 즉 자율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이용자 전체에 대한 대표성의 확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³³⁾

그밖에 민간의 전문성과 역동성의 존중 및 구현을 의미하는 상황적 접근,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최상의 보안을 의미하는 안정성, 비공식적인 합의절차를 가능케 하는 조직의 유연성 그리고 정책결정은 모든 참여자에게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투명성 등이 요구된다고 한다.

3. 정부규제

정부규제는 “국가의 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7조 및 “경제질서에 있어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에 근거하여 비탄력적인 법률로써 하되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³⁴⁾ 자율규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보충적으

33)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At Large Member” 선거에 관한 논의가 카이로에서 행하여졌다. 이에 관한 상세는 이정엽, ICANN카이로 회의결과보고 - AT Large 선거논의, 2000. 3. 24.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캔 포럼 자료 참조.

34) 참고 헌재판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로 진입규제나 수행규제를 하게 되는바,³⁵⁾ 정부규제(경찰규제)를 할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가장 경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제한을 받게 된다.

4. 작은 맺음

정부규제는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생활에 대한 강한 규제로서 기능하는 결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는 억제력을 갖는다. 문제는 정부규제가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제어장치로 기능할 수는 있지만 규제자체가 과잉되거나 역으로 미흡할 우려 및 인적·제도적 경직성으로 인하여 사회발전을 포용하는 현실규범성을 상실할 우려 외에 특정한 이익집단이 자신에게 불리한 법안의 제·개정을 사전봉쇄할 우려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이와달리 인터넷 가버넌스는 모든 이용자들의 참여에 의한 투명한 절차에 따른 자율규약의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유비쿼터스 사회가 가져올 초국가성 및 끊임없는 접속성이란 측면에서 매우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의 공간 내에서 물리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합의도출이 쉽지 않고 또한 일반 이용자가 문제의 인식과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이해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³⁶⁾

결국, 정보프라이버시권과 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는 법률로써 규제를 하되 시대탄력적이고 시장 진·출입 또는 시장수행적인 사항은 인터넷 가버넌스에 의하는 상호보완적인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보다 많은 지지(러프한 컨센서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가버넌스에 의하고 그러한 합의가 얻어지면 다수결이라고 하는 정부규제적 접근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V. 맺는 말

어긋난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35) 이는 국가의 경제관여에 대한 원칙과 예외의 규율형식으로 이해하면서 예외에 있어서는 최적화명령에 따른 국가의 소명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고도 한다. 이 덕연, “한국의 경제헌법질서상 기업의 자유”, 공법연구 제29집제1호, 165쪽.

36) 전용휘, “KR의 At-Large Member들의 조직화 방안”(nnc-000811-4) 참조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회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못하는 전체주의적 사회로 흘러 모든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 특정인에게 투명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결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내적 생활을 더 이상 자유롭게 가질 수 없게 된다면 개인의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적 틀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국가의 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7조 그리고 “경제질서에 있어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19조가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시장자유규제에 대한 보충적 규제로서 최소의 정부규제(경찰규제)를 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책무³⁷⁾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종합할 때, 다가올 유비쿼터스 국가는 타인에 의한 정보지배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될 위험성(또는 개인지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기업이 약속강식의 “게임의 법칙”이 아닌 각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받는 “게임의 법칙” 하에서 시장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게임의 법칙을 누가 형성하는가에 있다고 할 것인바,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보장³⁸⁾과 개인데이터의 암호화 (가시적 익명으로 처리 저장) 및 인터넷 가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이용자에 대한 납득가능한 정보제공 의무,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통한 소비자의 시장선택권보장 등은 정부규제의 대상으로 삼되 사업수행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탈국가적이고 고도의 기술적·가변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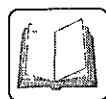
37) 이 규정은 우리 헌법의 최고의 근본규범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13전정판), 박영사, 360쪽.

38) 정보자유에 선행하는 가치로는 개인의 생명·신체 내지 인격적 가치가 있고, 정보자유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관여 내지 비판하는 것으로 될 경우에 규제입법은 필요불가결한 최소한 요건이라고 한다 和田英夫·原田 三朗·日等完治·鳥居壯行, 情報の法と倫理, 133쪽

도메인, 보안 또는 암호화의 방법규약 등은 인터넷 가버넌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요컨대, 정부규제와 자율규제를 표현되는 인터넷 가버넌스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가 보다는 보완관계에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는 정부규제를 기반으로 하였지만, 국내외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이해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규제시스템인 정부 규제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인터넷 가버넌스가 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 두 가지의 의사결정·합의형성시스템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IT전문가와 사회학자 및 법학자 등과의 끊임없는 대화·토론을 통한 인간가치 중심의 합의도출과 그 합의의 제도화라고 할 것이다



● 정준현

유비쿼터스(Ubiquitous) 개인지배(personal domination) 개인정보영향평가(personal data effect assessment) 인터넷 가버넌스(internet governance)

[Abstract]

Ubiquitous Computing Society and Privacy Protection

Prof Dr Jeong Jun-hyeon

Commung information Age, represented by the Ubiquitous Computing, gives us one hand "Realtime Well-being" and another hand "Fear of Big browser". Namely, it makes us to satisfy any desire over the limit of time and space through the seamless computer networking between demander and supplier.

Simultaneously, it drops us seized with fear that somebody(so called "Big Browser") dominates my slight motion or trend any time and any place through the Information Technology confused with multi-media,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medical system and so on ; Such as the cinema, "The enemy of the state" and "Matrix".

To overcome this fear;

First, every personal data including not only any identifying data but also extra data like personal hobby, medical history and every electronic prints must be recognized as a part of the personal right.

Second, Every personal data Collector must notify the data belonged the scope of his and her right of data-self-decision assuming full informed consent.

Third, every prcessed personal data must be stored anonymously(in form of visible anonym) and dispersedly and transferred in strictly limited condition.

Finally, the Government must introduce "personal data effect assessment system" against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and other likes.